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63호

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5조제3항제14호나목에 따라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1. 8.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
2. 위탁업무
   가. 국내·외 우편관련 시장의 조사·분석
   나. 우편상품의 개발 및 그 부대사업
   다. 우표류 제작(나만의 우표, 고객맞춤형 우편엽서 등) 및 그 부대사업
   라. 인터넷 맞춤형 편지 서비스 운영 및 그 부대사업
   마.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
      1) 우체국쇼핑(PostShopping)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
      2) 기타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
   바. 우체국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
   사. 우표 전시회 개최, 우표 전시관 설치·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·운영 등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7호(2012. 2. 9.)는 폐지한다.